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공고기간

2025년 1월 21일(화)**~2025년 2월 19일**(수)

사업설명회

2025년 1월 23일(목) **14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대강당)



주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창업진흥원

목차

1.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2.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교육부) ····· 17

3. 실험실특화 창업중심대학
(중소기업벤처부) ····· 27

4. 공고문 ····· 33

01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사업

2025. 01. 23(목)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목차

Ⅰ 사업개요 ····· 3

Ⅱ 세부 추진내용 ····· 10

Ⅲ 기타 사항 ····· 17



Ⅰ 사업개요

Ⅰ. 사업개요(1)

사업 목적

□ 대학 실험실 보유 우수 연구성과 기반한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 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 개편 등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R&BD 지원 등을 통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 기간

□ (총사업기간) '25.4.1~'26.12.31 (1단계('25년) : '25.4.1~'25.12.31)
※ 1단계 평가 후 2단계('26.1.1~'26.12.31) 지원 여부 결정

사업 예산

□ ('25년 예산) 14,354백만원(과기정통부 10,650백만원, 교육부 3,704백만원)

지원 규모

□ 13개 대학(군) 및 1개 창업전문 교육기관

구분	주관기관(개)	부처별 지원금액(백만원, 주관기관별)		
		과기정통부	교육부	총액
단독형	7개 이상	750	225	975
연합형	6개 이하	900	315	1,215
교육기관	1개	-	135	135

4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Ⅰ. 사업개요(2)_지원체계

지원 체계

□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창업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공동 지정**
- **주관기관**은 창업유망 실험실을 '**혁신창업실험실**'로 **지정 → 창업 인프라**(교육부)와 **창업 준비**(과기정통부) **지원**
- 창업에 성공한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은 **창업중심대학**(중기부)으로 연계 →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지원**

< 부처간 사업 협업체계 >

부처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시행기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창업진흥원
사업명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	실험실특화형 창업중심대학
역할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실험실 창업기업 성장 지원
지원 내용	창업 교과목·동아리, 학생 수당 등 지급		BM고도화, R&BD, 전문인력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창업 유도				창업기업 성장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Ⅰ. 사업개요(3)_중점추진방향

중점 추진 방향 (1)

① **국가전략기술 기반 '혁신창업실험실[전략형] 지정 및 집중 지원**

√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 보유 실험실 '**혁신창업실험실(전략형)** 신규 지정 및 연구비 추가' 지원

※ 12대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혁신창업실험실(일반형) + 30백만원

②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절차 간소화**

√ 대학 자체 **혁신창업실험실 선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연구개발 기간 확보

※ (기존) 주관대학 선정→대학이 혁신창업실험실 자체평가→**전문기관 점검**→사업관리위원회 의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최종 확정

(변경) 주관대학&예비창업실험실 평가(**전문기관**)→예비창업실험실 대상 사전기획 후 **자체평가를 통해 혁신창업실험실 최종 확정(주관대학)**

③ **전문인력 역할, 연합형 협력 강화**

√ (전문인력) 실험실 창업 全 과정 밀착 지원 → 실험실별 **전문인력 활동보고서 작성** 등 수행 역할 확대

※ **단독형(1인), 연합형(2인)** 신규 채용 또는 기존 인력 지정

√ (연합형) 주관-공동기관 간 **공동목표 또는 협업과제를 통한 협업성과 창출**

※ (공동목표) 참여대학 간 특허/기술 융합 BM 제안, 연합 실험실 네트워킹 데이·IR 행사 공동 추진 등

(협업과제) 실험실 간 특허 패키징 또는 융합형 창업*

* **융합형 창업** : 별도 선정절차 없이 2단계 진입(최대 2년 지원, 희망 시)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Ⅰ. 사업개요(4)_중점추진방향

중점 추진 방향 (2)

④ **실험실 예산 운영 효율성 확대**

√ 실험실 특성 및 창업준비 단계 고려 대학 자율로 실험실 선정 규모 및 예산 차등, 연합형 과제 내 대학 간 실험실 선정규모 자율

⑤ **실험실 성장 주기별 부처 협업 체계 강화**

√ (교육부-과기정통부) 예비창업실험실의 기초창업교육 의무화 및 이를 반영한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 (과기정통부-중기부) 실험실 창업 성공기업 대상 사업화 연계 희망 조사 및 후속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추진

⑥ **혁신창업실험실 및 전담인력 대상 실전창업교육 추진**

√ (혁신창업실험실) 고객가치 고려한 BM 설계, 법인설립 등 창업실무 교육,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 (전담인력) 창업보육 및 기술창업 생태계 직무교육 등

⑦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예비창업실험실 발굴 및 대학 내 기술창업 문화 조성**

√ 제2회 학생창업주간 연계 기술창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성과확산 프로그램* 연계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 및 포상 추진

* 예시) 실험실창업 페스티벌 등

7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Ⅰ. 사업개요(5)_중점추진방향

중점 추진 방향 (3)

⑧ **부처 연계 성과확산 행사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 확산**

√ 창업팀 및 창업기업의 연합 데모데이(IR) 운영

√ 전담인력 신규교육부 + 기존과기정통부 표창 추진

√ 탄소중립기술 기반 실험실 대상 창업 후속 성장지원 기회 부여

※ 창업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를 통해 '넷제로 챌린지 X'로 지정 및 후속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 창업중심대학(중기부) 연계 지원

※ ('25년 지원규모(안)) 30개 내외(평균 75백만원, 최대 200백만원)

⑨ **수행주체 간 네트워킹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창업 지원 노하우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수행대학 전문·전담인력 간 소통의 장 마련(워크샵 등)

√ 사업추진협의회 중심의 참여대학 간 네트워크 및 성과교류·확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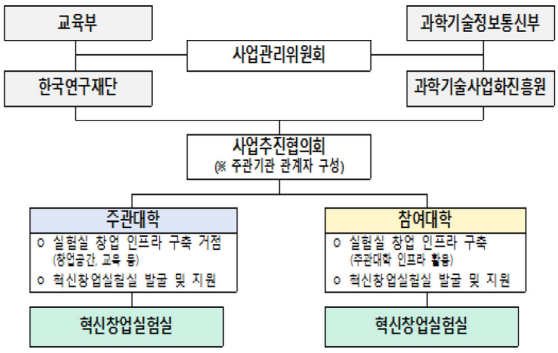
8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Ⅰ. 사업개요(6)_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 (주관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주관기관) 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9

Ⅱ 세부 추진내용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Ⅱ. 세부 추진내용(1)_주관기관 선정 개요

□ 주관기관 선정 규모 : **13개 대학**(단독형 7개 이상 + 연합형 6개 이하)

√ (지원대상) 대학* 및 과학기술원이 단독형(단일대학) 또는 연합형(주관대학 + 참여대학(2개 이내)으로 지원

※ 연합형은 실험실 창업 인프라 공동 구축·활용 및 혁신창업실험실 공동 발굴 추진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대학 중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거나 기관 인증 평가 인증을 못 받지 못한 대학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창업유망 기술(국가전략기술 분야 포함)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혁신창업실험실*)을 대상으로 R&BD, 사업모형 수립 등 실험실 창업준비 지원

* (구성) 실험실책임자(교원,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대표(실험실책임자와 동일인 가능), 연구원(대학 소속 실험실) 등

□ 혁신창업실험실 지원 유형 : 예비창업실험실 중 보유기술 현황에 따라 **유형별(일반형/전략형/융합형)로 구분**

단계	대상 실험실명(유형)	대상 설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1	예비창업실험실	대학에서 1차 발굴한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며, 창업의지가 있는 실험실(1.5배수)	사업모델 수립/고도화	'25.4~5월
2	혁신창업실험실(일반형)	1년 이내 창업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하며, 사업모델이 검증된 실험실	후속 R&BD 자금 지원, 창업준비지원 프로그램	'25.6~12월
	혁신창업실험실(전략형)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기술 창업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된 실험실		'25.6~12월
	혁신창업실험실(융합형)	2년 이내 창업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하며, 2개 이상의 실험실간 융합 창업예정 실험실(기술분야에 따라 일반형/전략형 연구비 지원)		'25.6~'26.12월 (소속대학의 2단계 수행 시)
3	사업화연계실험실	혁신창업실험실 중 실험실 창업 성공 이후, 중기부 사업화연계사업에 선정된 실험실	(중기부) 사업화 자금지원	'26년

11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Ⅱ. 세부 추진내용(2)_실험실 유형별 지원 기준

□ 단독형/연합형 대학별 실험실 지원 기준

√ 사전기획비 지원 예산 총액 및 최소 지원 수 기준 제시

√ 예비창업실험실 대상 **대학 자체평가('25.5~6월) 실시**하여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및 유형별 예산 차등 지원**

구분		단독형 (7개 대학 이상)		연합형 (6개 대학群 이하)		총 예상지원(수) (A+B)
		과제별 기준	단독형 총 지원수(A)	과제별 기준	연합형 총 지원수(B)	
1	예비창업 실험실(1.5배)	총 48백만원 內 12개 이상 지원	84개 이상	총 60백만원 內 15개 이상 지원	90개 이상	174개 이상
2-1	혁신창업 실험실(일반형)	총 135백만원 내외 3개 이상 지원	21개 이상	총 225백만원 내외 5개 이상 지원	30개 이상	51개 이상
2-2	혁신창업 실험실(전략형)	총 375백만원 내외 5개 이상 지원	35개 이상	총 375백만원 내외 5개 이상 지원	30개 이상	65개 이상

12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Ⅱ. 세부 추진내용(3)_평가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및 일정

단계	사업 공고		주관기관 선정		사전기획		혁신창업 실험실 선정		R&BD		창업보육		단계평가 (실적평가)
구분	주관기관 모집 공고	→ 서면 발표 평가	주관기관 (대학)선정 /단독형(7), 연합형(6)	→ 대학 선정	개념증명, BM 도출(174) /단독형(84내외), 연합형(90내외)	→ 실험실 1.5배수	BM 및 후속 R&BD 경쟁평가(116) /단독형(56내외), 연합형(60내외)	→ 최종 확정	R&BD (시제품, MVP) 사업모형 수립·검증·고도화 (7개월)	+	실험실창업 전문인력 밀착보육 및 법인설립 준비지원	→	주관기관 단계평가 (차년도 지원) + 실험실 실적평가 (지원 종료)
주관	과기정통부, 교육부 /COMPA, NRF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COMPA		대학+ 예비창업실험실		주관대학 (평가위원회)		혁신창업실험실		대학+ 혁신창업실험실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COMPA, NRF
일정	'25.1~2월		'25.3월		'25.4~5월		'25.5~6월		'25.6~12월		'25.6~12월		~'26.1월

※ 실험실 창업성과는 '혁신창업실험실' 최종 선정 이후만 실적으로 인정됨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Ⅱ. 세부 추진내용(4)_주관기관 선정평가

□ (주관기관 선정평가) 대학 실험실 창업 지원 의지 및 역량, 실험실 창업 인프라 구축계획, 혁신창업실험실 대상 창업 준비 지원 계획 등 평가

√ (평가절차) 사전검토(전문기관) → 서면평가(1차) → 대면평가(2차)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확정

※ 선정규모 2배 이하의 신청 규모 시 서면평가 제외 가능

① (사전검토_전문기관) 주관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제출서류 적합성 등 검토 →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

② (서면평가_선정평가위원회) 신청대학의 '실험실창업 종합지원계획' 에 대해 사업계획서 중심의 서면평가, 대면평가 대상' 선정

※ 최종선정 기관수(13개)의 1.5배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정

③ (대면평가_선정평가위원회) 신청대학의 '실험실창업 종합지원계획 ' 에 대해 정성평가 중심의 발표평가 → 대학 순위 결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산술평균, 종합점수 60점 미만 대학 탈락

④ (최종심의_사업관리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바탕 주관기관 선정(13개) 및 기관별 지원예산 최종확정

신청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결과보고
신청시 제출 및 ①사전검토	기본역량 ②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③대면평가	선정·조정 ④최종 심의	결과 보고
주관기관→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전문기관→주관부처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Ⅱ. 세부 추진내용(5)_사전기획

구분	안내 사항
정의	•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시장수요 기반의 기술 개념 증명과 BM 도출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 ~ 2025년 5월 이내
수혜대상	• 당해연도 수행대학이 발굴한 예비창업실험실
연구비 활용주체	• 실험실창업준비지원비(과기정통부) 중 BM수립 및 고도화를 위한 비용으로 주관기관(대학)이 총괄 집행·관리함
연구비 사용항목	• 연구활동비 : 외부전문기술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등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
지원규모	• 대학별 총 사전기획비* 내에서 단가·실험실 수와 무관하게 대학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사전기획 실험실 수 하한선* 제시 (최종 규모는 대학 협약에 따름) * (단독형) 48백만원 내 사전기획 12개 이상 / (연합형) 60백만원 내 사전기획 15개 이상 • 수행대학별 최종 선정 혁신창업실험실 규모의 약 1.5배수 이상으로 지원함
완료 보고 자료	• (대학) 예비 혁신창업실험실의 사전기획 지원보고서(총괄용) 제출 (실험실) 혁신창업실험실 사전기획 완료보고서(개별 실험실별) 제출 • (사전기획 보고서 예시) BM고도화 프로그램 보고서, 컨설팅 전/후 보완사항, 멘토링 보고서, SWOT, BM타당성 분석 결과, 아이템/전략 분석 결과요약서 → 주관기관에서 계획한 사전기획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율양식으로 보고
결과활용	• 사전기획 내용(BM·사업화 타당성)을 반영한 주관기관별 자체평가 실시 → 혁신창업실험실 최종 선정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Ⅱ. 세부 추진내용(5)_혁신창업실험실 선정, 주관기관 단계평가

□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사전기획 완료된 예비창업실험실 대상 주관기관이 자체평가 실시

√ (평가절차) 실험실 발굴(주관기관) → 사전기획(주관기관) → 혁신창업실험실 선정(주관기관) → R&BD(혁신창업실험실)

① (실험실 발굴) 대학 자체 우수 예비창업실험실 발굴 → 사업신청 시 예비창업실험실 요약표 전문기관에 제출

② (사전기획) 선정된 주관기관은 대학 내외부 전문가 활용하여 BM 도출, 사업성 및 사업시나리오 분석 등 BM 타당성 검증

③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실험실 창업계획서 및 사전기획 결과 기반 지원 적절성, BM 타당성 검증 등 경재형 평가 실시
→ 혁신창업실험실 최종 선정

④ (R&BD) 연구개발비 지원(수행대학 → 혁신창업실험실) → 창업 → 후속사업* 지원
* 실험실특화형 창업중심대학(중기부), 넷제로 챌린지 X(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주관기관 선정 및 사업개시	▶	사전기획 2개월 내외	▶	혁신창업 실험실 평가 및 확정	▶	R&BD 지원 7개월 내외	▶	단계평가 (실험실실적평가)
단독형 7개 이상 연합형 6개 이하		단독형(12개 이상) 연합형(15개 이상)		BM 및 후속 R&BD 선정평가	경쟁형 평가	단독형(8개 이상) 연합형(10개 이상)		단독형 7개大 연합형 6개大 +혁신창업실험실
전문기관		대학+예비창업실험실		대학		혁신창업실험실 (일반형/전략형)		전문기관

□ (주관기관 단계평가) '25년 선정 주관기관 대상(13개)

√ (평가 목적 및 방향) 사업 추진성과 및 2단계 추진계획 평가 → 1년간 추가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차등 지원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Ⅱ. 세부 추진내용(6)_주관기관 선정평가 지표

□ (주관기관 선정평가 지표_단독형)

√ 대학의 역량 및 의지, 추진전략, 예비창업실험실(보유기술 우수성, 창업준비 활동 적절성 등), 운영계획(인프라, 창업교육, 성과관리) 등

□ (주관기관 선정평가 지표_연합형)

√ 주관대학과 참여대학 구성 및 역할분담 우수성, 대학의 역량 및 의지, 추진전략(컨소시엄 간 공동목표 제시 적절성 등), 예비창업실험실(보유기술 우수성, 창업준비 활동 적절성 등), 운영계획(인프라, 창업교육, 성과관리) 등

16

Ⅲ 기타 사항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Ⅲ. 기타 사항(1)_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

√ (참여제한자)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서류미비)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작성인 경우

√ (과거 참여이력) 기존 지원 기술(특허)를 활용한 실험실 참여 불가, 기존 창업 유망기술로 지원받아 창업한 인원(기업 대표)의 중복 창업 불가

□ 실험실창업지원 내역사업 중복 지원 시

√ (중복 수행 불가) '25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에 동일 참여연구원(EL 또는 EM)으로 지원, 동일 아이템(유사 기술을 포함한 연구계획서) 지원하여 최종 선정 시 중복 수행 불가

1) (본 사업 수행 희망 시) 혁신창업실험실 선정통보('25년 6월 내 예정) 직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기초교육 중단 및 최종 실험실창업탐색팀 지원 포기 → 실험실창업혁신단 및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통보

2)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수행 희망 시) 실험실창업탐색팀 최종 선정통보('25년 5월 內 예정) 직후 본 사업 지원포기 의사를 주관기관 및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통보

18

2023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설명자료

Ⅲ. 기타 사항(2)_사업 공모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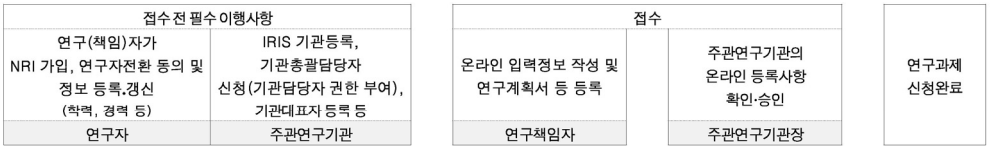
□ 사업접수 기간

구 분	내 용
사업 공고 기간	2025.01.21.(화) ~ 2025.02.19.(수) (30일)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5.02.05.(수) 9:00 ~ 2025.02.19.(수) 18:00 (15일)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5.02.05.(수) 9:00 ~ 2025.02.19.(수) 18:00 (15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접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 요강을 반드시 확인



19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Ⅲ. 기타 사항(3)_사업관리

사업관리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비 편성

현장 점검

- 사업추진 실적 모니터링(분기별), 진행사항 점검(현장점검/연 1회)

3책 5공

- 3책 5공 예외 적용
  - 3책 5공 예외에 해당 (단, 과제참여율이 100%가 넘지 않도록 타 과제 참여율 조정 필요)

사업 문의

소관부처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창업팀	02-736-9845	eun@compa.re.kr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기반팀	042-869-6403	onion2014@nrf.re.kr

20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Ⅲ. 기타 사항(4)_사업 추진일정

사업 공고 ('25.1월, 30일 이상)	· 사업공고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선정평가 및 사업관리위원회 (~'25.3월)	· 선정평가 및 최종 선정 심의(3월) · 주관기관 선정결과 보고(과기정통부) 및 공고 · 이의신청 접수
사업 협약 ('25.4월)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연구재단 ↔ 주관기관 협약 · 사업 개시(4.1~) 및 사업비 교부
사전기획(BM 고도화) ('25.4월~5월)	· 대학 자체 발굴한 예비창업실험실 대상 사전기획 실시 · 시장수요 기반의 개념증명과 BM 도출 및 고도화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25.5월~6월)	· BM 타당성 검증 등 대학 자체평가 실시 · 주관기관 '혁신창업실험실' 최종 선정 및 개별 협약 (수행대학 ↔ 혁신창업실험실)
사업 수행 ('25.6월~'25.12월)	· 후속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한 시작품, MVP 개발 등 ·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유도 및 후속투자연계 등 지원
중간점검 ('25.9월~'25.10월)	· 사업 추진실적 모니터링 · 진행사항 점검(연 1회)
단계평가 (~'26.1월)	· 1차년도 단계평가 · 2차년도 지원대학(지원예산) 확정
사업비 정산 (~'26.3월)	· 2025년 사업비 정산 실시(사용실적보고 제출)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사업공고>

2025.01.20.(월) ~ 2025.02.19.(수)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5.02.05.(수) 9:00 ~ 2025.02.19.(수) 18:00

21

Ⅲ. 기타 사항(5)_1기 vs 2기

구분	(1기)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2기)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기**('23~'24년, 1+1) (1단계) 23.4월~12월(9개월), (2단계) 24.1월~12월(12개월)	√ **사업기간 : 2기**('25~'26년, 1+1) (1단계) '25.4월~12월(9개월), (2단계) '26.1월~12월(12개월)
지원예산	√ **주관기관 지원규모 :** 13개 대학 群 및 1개 창업전문 교육기관 **총 예산 9,029백만원** ※ '24년도 과기부 5,325백만원, 교육부 3,704백만원	√ **주관기관 지원규모 :** 13개 대학 群 및 1개 창업전문 교육기관 **총 예산 14,354백만원(+58%)** - '25년도 과기부 10,650백만원, 교육부 3,704백만원(교육기관 제외)
실험실 지원규모	√ **93개 실험실 지원** (단독형 48개, 연합형 45개)	√ **116개 내외 실험실 지원** (단독형 56개, 연합형 60개)
지원대상	√ **실험실 지원대상 : 창업유망기술 기반** ※ 창업 적합성·가능성이 우수하고, 실제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 **실험실 지원대상 :** 집중지원 실험실 신규 선정 ① (기존) **창업유망기술 기반 '혁신창업실험실(일반형)'** - 창업 적합성·가능성이 우수하고, 실제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② (신규) **국가전략기술 기반 '혁신창업실험실(전략형)'** -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기술 창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된 실험실
부처협력	√ **부처간 협력 체계 수립** - 실험실 선정 시, 전문교육기관(KATH)의 창업 기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수료한 실험실에 **가점 3점 부여**하여 최종 점수 산출	√ **부처간 협력 체계 고도화** - (교육부) 혁신창업실험실 평가 시 창업교육 이수 필수화(변경 **P/F 적용**) - (중기부) 실험실 창업기업 대상 후속 사업 설명회 개최 지원으로 연계 홍보 강화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감사합니다!

COMPA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MEMO

MEMO

02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교육부

2025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설명회

- [교육부]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창업전문 교육기관 운영 -

2025. 01. 23. (목)

산학협력기반팀장 김 우 영

NRF 한국연구재단

I.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창업전문 교육기관 운영

가.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나. 창업전문 교육기관 운영

II. 사업비 편성·집행 및 관리·점검

가. 사업비 관리 방안

나. 사업 관련 부정 · 비리 사안 등에 대한 조치

Ⅰ.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창업전문 교육기관 운영

가.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나. 창업전문 교육기관 운영

가.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유형별(연합·단독형)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단독형 : 대학 및 과학기술원이 단일 대학으로 지원한 유형

- 교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정 개선
  ※ 창업 휴학제, 창업 연구년제 등 창업 우호적 제도 마련

연합형 : 대학 및 과학기술원이 주관대학과 참여대학(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합하여 지원한 유형

- 주관·참여기관의 업무협정(MOU)을 통한 창업 관련 교류 운영으로 공동 창업 인프라 구축
  ※ 창업 학점 교류제, 권역별 맞춤형 창업교육, 그룹 네트워킹 등

공통(단독형+연합형)

- 실험실 창업 공통교과 개발 및 비교과 창업 프로그램 공동 운영
  ※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기업가정신, 기술창업, BM 수립, 기술가치평가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비 대학 發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비용 계상

집행 기준

구분	사용명칭	사용목적	계상 기준	연구개발혁신법상 비목	비고
직접비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비 (교육부)	인건비	실험실창업 지원 인건비 (1인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인건비	
		학생수당	혁신창업실험실 소속 학생 창업 몰입 비용 ※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정	연구활동비	
		교육과정 운영	창업 강좌 개설 및 운영비, 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비 등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기타사업운영비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수수료, 여비, 홍보비 등	연구활동비	교육부 사업비의 5% 이내

교내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비를 통해
대학 發 실험실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창업 추진 의지 고취 도모

나. 창업전문 교육기관 운영

先교육- 後후속 R&D 체계 저변 확대

전문 창업교육 : 창업 고도화·안정화를 위한 '전문 창업교육' 운영 추진

- 대학 실험실(LAB) 단위 '기초·실전 창업교육'을 창업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先 교육 – 後 후속 R&D」 체계 저변 확대

교육 의무화 및 고도화 :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교육 의무화 및 고도화

- **(의무화)**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시 **2025년 「창업전문 교육기관」 기초 창업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실험실 창업 의지를 반영한 선정 추진
- **(고도화)** 혁신창업실험실 및 실험실창업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창업 시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 및 시장분석, 기술동향, 창업 지원 절차 등 **'실전 창업교육' 실시**

교육내용	혁신창업 실험실	실험실 창업 전담인력
	고객 가치를 고려한 BM 및 성장모델 설계, 법인설립 과정에 필요한 실무정보 등 안내	창업보육 및 기술창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지식재산권 활용 전략 등) 실시

- 실전창업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 성공 가능성 제고

나. 창업전문 교육기관 운영

창업전문 교육기관 민간 창업 교육기관 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교육기관'으로 지원한 유형(교육부 단독)

주요 역할
- ▶ 선발 전, 창업전문교육 실시로 비즈니스 모델 사전 검증 및 창업성공 가능성 제고
- ▶ 실험실 창업 전담인력에 대한 직무 교육 실시로 학내 창업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

교육추진 프로세스(안)

〈교육기관 선정〉 '25.3월	〈교육과정 구축〉 '25.4월	〈교육 실시(상반기)〉 '25.5월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25.5월~6월	〈필요 시〉교육 실시(하반기) '25.9월	〈창업보육〉 '25.10월
▶창업전문 교육기관 선정	▶ 교육기관 창업 교육 프로세스 구축	▶ (예비)혁신창업실험실 대상 창업 교육 실시 ※ 오프라인 집체교육(예정) ※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대상	▶기초 창업교육 이수 완료자 대상으로 선정	▶ (예비)혁신창업실험실 대상 창업 교육 실시 ※ 오프라인 집체교육(예정) ※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대상	▶ 시장동향, 경쟁자 분석, 전문가 멘토링 등 추가 창업 보육 실시 ※ 오프라인 집체교육(예정)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창업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전 창업 교육 실시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위한 전문 창업교육 체계" 구축

Ⅱ. 사업비 편성·집행 및 관리·점검

가. 사업비 관리 방안

나.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에 대한 조치

가. 사업비 관리 방안 ※ 교육부 사업 예산에 한하여 적용

- 사업비는 향후 안내 예정인 '사업비 집행 가이드 라인'에 따라 편성·집행
- 사업비 예산 변경은 수행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사업비 이월 및 정산

▶ 사업 종료 후 이월 승인받은 1차년도('25년) 사업비의 경우 2차년도('26년)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집행

※ **단계평가('26년 초) 후 계속 수행 대학에 한하여 허용하며, 계속 수행이 불가할 경우 사업비 집행 잔액은 반납**

▶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비 및 발생이자 사용 잔액(차기 회계연도 이월금액 제외)은 반납

관련 참고사항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中

✓ 제38조(사업비 이월 허용 범위)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이월의 절차, 방법 및 한도 등은 사업별 기본계획 및 지침으로 정한다.

✓ 제39조(예금이자 및 수익금 등의 처리) ① 사업기간동안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되, 연도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에 대한 조치 ※ 교육부 사업 예산에 한하여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엄중조치

✖ **①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②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사업 관련 대학정보공시 지표값 오류 등 사업비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된 대학의 부정 · 비리가 확인된 경우, ③ 사업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 운영과 관련된 대학의 부정 · 비리가 확인된 경우, ④ 그 외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 · 비리로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 근거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 운영 관리 매뉴얼 」(2023.7.)

✖ 사안에 따라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삭감 및 환수, 평가점수 감점, 지원액 삭감** 등의 제재 조치 실시

※ 부정·비리 사안으로 사업비 감액조치 등을 통해 발생한 잔여 예산은 타 사업 수행대학에 재배분 예정(배분방식 및 규모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특히,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가능**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③ 법령 ·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④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사업이 종료·개편된 경우에도 현장점검, 사업비 환수(후속·관련 사업비 삭감), 관련 사업 선정평가 시 반영 등 가능

감사합니다.



2025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설명회

2025. 1. 23. (목)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기반팀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MEMO

MEMO

03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실험실특화 창업중심대학

중소기업벤처부

세상을 바꾸는 **창업**, 변화를 이끄는 **창업진흥원**

창업중심대학(실험실특화) 사업화 연계 설명자료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창업진흥원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창업중심대학 (실험실 특화)

창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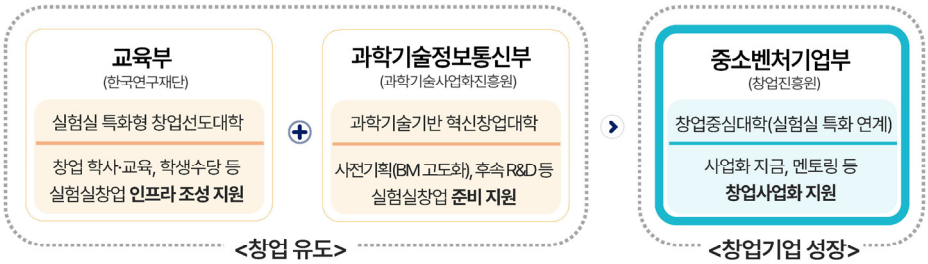
› 지역 산업, 청년 등 지역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

연계현황

» 추진경과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굴한 혁신창업실험실(창업유망기술 보유)에서 창업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평가를 통해 **해당 실험실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 등 지원** ('20~)

» 실험실창업 지원 부처협업 체계



1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창업중심대학 (실험실 특화)

› 지역 산업, 청년 등 지역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

지원대상 혁신창업실험실 창업기업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평균 75백만원 , 최대 2억원 지원 예정)

모집기간 2025년 3월중 예정 (선정 후 약 8개월 사업수행)

지원내용

› 창업 아이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지식재산 취득비,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활용 가능

› 창업기업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 지원 (대학별 상이)

- 기술,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

* 선정된 창업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확정 및 지원 예정(교육, 마케팅, 실증, 투자유치, 채용, 해외진출, 네트워킹 확대 등)

- 기타 창업중심대학별 협력기관(기업, 유관기관, 연구소, 대학 등) 연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창업중심대학 (실험실 특화)

› 지역 산업, 청년 등 지역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

주관기관 창업중심대학(6개 권역, 11개 대학)을 통해 지원·관리

› 참고 :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 ('24년 9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한양대학교 (서울)	호서대학교 (충남)	전북대학교 (전북)	강원대학교 (강원)	대구대학교 (경북)	부산대학교 (부산)
성균관대학교 (경기)	한남대학교 (대전)				경상국립대학교 (경남)

* 2025년 신규 대학(2개 내외) 선정 예정 ① 전남, 광주, 제주 소재한 대학 중 1개
② 세종, 충북, 대구, 울산에 소재한 대학 중 1개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설명회

창업중심대학 (실험실 특화)

창업진흥원

› 지역 산업, 청년 등 지역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

추진절차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사업화 연계 수요조사	사업화 모집공고	신청·접수 (수요기업 대상)	선정평가
기술개발 수준 및 창업적합성 등 평가	사업화 연계 희망 수요조사	공고문, 사업계획서 안내	K-Startup을 통한 신청·접수	서류평가 + 발표평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창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창업중심대학 신규 주관기관 선정 및 사업화 연계 수요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진일정 확정 예정

협조 요청사항

› 사업화 연계 수요 발굴·관리

혁신창업실험실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중심대학으로 연계 협조

4

세상을 바꾸는 **창업**
변화를 이끄는 **창업진흥원**

국민과 함께 창업의 미래를 여는 **혁신창업파트너**

Thank You.

창업진흥원

MEMO

04

공 고 문

교육부 제2025-OOOO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5-OOOO호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공고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

1. 기본방향

○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 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 개편** 등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R&BD 지원** 등을 통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창업선도대학 육성**

2. 선정계획

가. 선정규모 : 13개 대학(단독형+연합형)

구분	주관기관(개)	과제당 지원 혁신창업실험실(개)
단독형	7개 이상	8개 이상
연합형	6개 이하	10개 이상
합계	**13개**	-

※ 연합형(컨소시엄)은 주관대학(1개)과 참여대학(2개 내외)으로 구성

나. 지원기간 : ’25.4월 ~ ’26.12월(9개월+1년)

다. 신청대상 : 대학(고등교육법) 및 과학기술원(개별법)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대학은 2025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限

다. 지원규모

구분	주관기관(개)(A)	기관별 지원금액(백만원)			기관당 혁신창업실험실(개)			총실험실(개)(A×B)
		과기정통부*	교육부**	총액	일반형	전략형	합계(B)	
단독형	7개 이상	750	225	975	3개 이상	5개 이상	8개 이상	56개 이상
연합형	6개 이하	900	315	1,215	5개 이상	5개 이상	10개 이상	60개 이상
합계	**13개**	-						116개 이상

* (과기정통부 지원금) 사전기획비, 연구개발비, 창업지원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사용

** (교육부 지원금) 실험실 창업 교육과정 운영 자금 등에 사용

※ 주관기관 사업비 구성의 세부내용은 안내자료 참고

라. 지원내용

○ **(지원개요) 창업유망 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혁신창업실험실')을 대상으로 **R&BD, 사업모형 수립**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 **(지원체계) 교육부** 및 **과기정통부**가 **연구성과**와 **창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또는 **대학群**)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공동 지정**

- **주관기관**은 창업유망 기술을 보유한 실험실을 **'혁신창업실험실'로 지정**해 **창업 인프라**(교육부)와 **창업 준비**(과기정통부)를 **연계 지원**
- 창업에 성공한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은 **창업중심대학**(중기부)*으로 연계,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지원으로 **안정적인 후속성장 도모**

  * 제한공모를 통한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 '25년도 지원규모(안) : 30개 내외(평균 75백만원, 최대 200백만원)

- 탄소중립기술 기반의 실험실을 발굴하여, 창업 후속 성장지원 기회 부여

  ※ 창업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여도 평가를 거쳐, 「넷제로 챌린지 X」로 지정

< 부처 간 사업 추진체계 >

부처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시행기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창업진흥원
사업명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	실험실특화형 창업중심대학
역할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실험실 창업기업 성장 지원
지원 내용	창업 교과목·동아리, 학생 수당 등 지급		BM고도화, R&BD, 전문인력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창업 유도				창업기업 성장

< 부처별 지원내용 >

부처	목적	지원내용
교육부	창업 기반조성	실험실 창업 공통과목 개발, 비교과 창업 프로그램 공동 운영, 창업 고도화·안정화를 위한 '전문 창업교육' 운영 추진
과기정통부	창업 유망 기술개발	창업유망 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혁신창업실험실') 선정 및 R&BD, 사업모형 수립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중기부	창업사업화	혁신창업실험실에서 창업에 성공한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은 실험실특화 창업중심대학(중기부)으로 연계,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지원으로 안정적인 후속성장 도모

○ **(지원대상) 대학** 및 **과학기술원**이 **단독형**(단일대학) 또는 **연합형**(주관대학+참여대학)으로 지원

- **연합형 주관기관**(주관+참여大)은 실험실 창업 **인프라**를 **공동 구축·활용**하며, **창업 준비 지원 실험실**('혁신창업실험실')을 **공동 발굴**

○ **(지원방식)** 주관기관은 사업기간(2년) 동안 『**실험실 창업 종합 지원 계획**(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 종합 지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이행**

* 주관기관 지원 시 제출하며, 지원기술 목록 및 지원계획(기간, 예산),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제도, 교육) 및 실험실 창업준비 연계 지원계획 포함

- 대학의 **실험실 운영 경쟁력 확보**와 **우수 창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창업준비 단계별 **지원 유형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실험실의 창업준비 단계별(1~3) 특성 및 보유기술 현황에 따라, 유형별 **(일반형/전략형/융합형*)** 지원하여 **창업 분야**에 맞는 **창업 준비 기회 제공**

* 융합형은 최대 2년 지원 가능

< 혁신창업실험실 유형별 개요 >

단계	대상 실험실명 (유형)	대상 설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1	예비창업실험실	대학에서 1차 발굴한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며, 창업의지가 있는 실험실(1.5배수)	사업모델 수립/고도화	'25.4~5월
2	혁신창업실험실 (일반형)	1년 이내 창업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하며, 사업모델이 검증된 실험실	후속 R&BD 자금지원, 창업준비 지원프로그램	'25.6~12월
	혁신창업실험실 (전략형)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기술창업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된 실험실		'25.6~12월
	혁신창업실험실 (융합형)	2년 이내 창업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하며, 2개 이상의 실험실간 융합 창업 예정 실험실 (기술분야에 따라 일반형/전략형 연구비 지원)		'25.6~'26.12월 (소속대학이 2단계 수행 시)
3	사업화연계 실험실	혁신창업실험실 중 실험실 창업 성공 이후, 중기부 사업화연계사업에 선정된 실험실	(중기부) 사업화 자금지원	'26년

* 12대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마. 신청 참고사항

○ 신청대학은 사업전담인력* 최소 1명을 사업 수행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신청계획서 내에 대학 보유 예비창업실험실 목록** 및 요약서를 작성·제출

*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는 본 사업을 통해 발굴된 창업기업의 원활한 창업중심대학(중기부) 사업화 연계를 위해 창업기업에 사업안내, 애로사항 접수, 지속적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대학이 보유 중인 '예비창업실험실'에 대하여 작성하되, 해당 실험실 중 대학이 '25년 사업을 통해 지원할 '혁신창업실험실' 선정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내 명기 (단독형 12개 이상, 연합형 15개 이상)

○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내에서 '혁신창업실험실'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해당 실험실에 대한 창업계획서를 작성

※ 단, 혁신창업실험실별 지원기간은 '25년도 사업기간('25.4~'25.12)에 한하며(융합형의 경우 필요 시 최대 2년 지원 가능) 지원 시 창업 필수

※ '18~'24년 참여대학의 경우, ①기존 지원기술(특허)를 활용한 실험실 창업 불가 ②기존 창업유망기술로 지원받아 창업한 인원(기업대표)의 중복 창업 불가

○ 신청대학은 실험실창업 전문인력*을 배치(단독형 1명, 연합형 2명)하며, 신청계획서 내 인력 수 및 선발·활용 계획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

* 시장중심형 연구개발, 투자 유치 등 경영 실무를 맡아 실험실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인력

3. 선정평가

< 주관기관·혁신창업실험실 선정절차 >

단계	사업 공고		주관기관 선정		사전기획		혁신창업 실험실 선정		R&BD		창업보육		단계평가 (실적평가)		성과
구분	주관기관 모집 공고	→ 서면 발표 평가	주관기관 (대학)선정 /단독형(7), 연합형(6)	→ 대학 선정	개념증명, BM 도출(174) /단독형(84내외), 연합형(90내외)	→ 실험실 15배수	BM 및 후속 R&BD 경쟁평가(116) /단독형(56내외), 연합형(60내외)	→ 최종 확정	R&BD (시제품, MVP) 사업모형 수립·검증·고도화 (7개월)	+	실험실창업 전문인력 말착보육 및 법인설립 준비지원	→	주관기관 단계평가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 실험실 실적평가 (지원 종료)	⇨	실험실 창업*
주관	과기정통부, 교육부 /COMPA, NRF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COMPA		대학+ 예비창업실험실		주관대학 (평가위원회)		혁신창업실험실		대학+ 혁신창업실험실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COMPA, NRF		혁신창업 실험실
일정	'25.1~2월		'25.3월		'25.4~5월		'25.5월		'25.6~12월		'25.6~12월		'26.1월		수시

* 실험실 창업성과는 '혁신창업실험실' 최종선정 이후만 인정됨

가. 주관기관 선정

○ **(평가절차)** 사전검토(전문기관) → 서면평가(1차) → 대면평가(2차)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확정 절차로 진행

※ 접수규모가 선정규모의 2배 이하(26개 과제 접수)인 경우, 서면평가 제외 가능

< 사업 선정평가 절차 및 방식(안) >

신청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결과보고
신청서 제출 및 ①사전검토	**기본역량** ②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③대면평가	**선정·조정** ④최종 심의	결과 보고
주관기관→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전문기관→주관부처**

① **(사전검토)** 주관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전문기관)

② **(서면평가)** 신청 대학의 『실험실 창업 종합 지원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서 중심의 서면평가로 **선정기관수의 1.5배수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정(선정평가위원회)

③ **(대면평가)** 신청 대학의『실험실 창업 종합 지원계획』에 대해 **정성평가 중심**의 **발표평가**를 통해 대학 순위 결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산술평균, 종합점수 60점 미만 대학은 탈락

④ **(최종심의/사업관리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관기관 선정** 및 **기관별 지원예산** 등 **최종 확정**(13개 주관기관)

○ **(평가지표)** 대학의 실험실 창업 지원 의지 및 역량, 실험실 창업 인프라 구축 계획, 혁신창업실험실 대상 창업 준비 지원계획 등

※ 선정평가부터('25~)「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부정·비리 수혜제한(교육부 사업예산에 한해 적용)

※ 부정·비리 제재대상 수행대학의 사업비 감액조치로 인해 발생한 잔여 예산은 타 수행대학에 재배분 → 배분방식 및 규모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

① 주관기관 선정평가 지표(안) (단독형)

평가지표			배점
지표		세부내용	
역량 및 의지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주관기관(기관장)의 지원(추진) 의지 - 사업 참여인력*(정량/정성)의 우수성 * 사업전문인력 및 혁신창업실험실 책임자 外 사업지원을 위한 대학 내 인력(교수, 교원 등) ▸ 주관기관의 실험실창업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공공기술기반 실험실창업 건수 및 우수 성공사례 등 제시 ▸ 주관기관의 대학원 창업교육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 건수 및 우수 사례 등 제시	10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목표·전략과 적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 목표의 적절성(창업건, 교육이수율, 만족도 등) - 주관기관 역량 대비 목표의 타당성,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20
예비혁신창업 실험실		▸ 보유 기술의 우수성 및 후속 R&BD의 적절성 ▸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창업) 타당성 ▸ 창업준비 활동의 적절성	15
운영 계획	인프라	▸ 실험실창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프라 구축 계획의 적절성 ▸ 주관기관 실험실창업 전문인력 확보/운영계획의 적절성 ▸ 실험실창업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지원방향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교육 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 구축 계획의 우수성 -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프로젝트 트랙, 학/석사 창업연계과정, 창업연구년, 업적평가 반영 등	15
	창업 교육	▸ 창업 우호적 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계획 ▸ 우수한 실험실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 교육모델 운영계획의 우수성 - 창업강좌,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우수한 실험실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모델 운영 계획	20
	성과 관리	▸ 성과제고(창업 등)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대학 인프라 활용 방안 등 ▸ 성과(후속)관리 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품화, 기업설립, 투자유치 등 창업 이후 후속지원의 적정성 - 창업지원(사전기획) 이후, 창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창업유망기술 활용방안	10
파급효과		▸ 사업수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신규고용 창출 등)의 가능성	5
예산 수립		▸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 기술분야별 예산 지원 적정성, 실험실창업 지원비 사용 계획 등	5
합계			100

※ 상기 지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② 주관기관 선정평가 지표(안)(연합형)

평가지표			배점
지표		세부내용	
역량 및 의지		▸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우수성 - 기술별 또는 권역별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적절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주관기관(기관장)의 지원(추진) 의지 - 사업 참여인력*(정량/정성)의 우수성 * 사업전문인력 및 혁신창업실험실 책임자 外 사업지원을 위한 대학 내 인력(교수, 교원 등) ▸ 주관기관의 실험실창업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공공기술기반 실험실창업 건수 및 우수 성공사례 등 제시 ▸ 주관기관 및 참여대학의 대학원 창업교육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 건수 및 우수 사례 등 제시	10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목표·전략과 적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 목표의 적절성(창업건, 교육이수율, 만족도 등) - 주관기관 역량 대비 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컨소시엄(주관기관 + 참여기관)간 공동목표 제시의 적절성	20
예비혁신창업 실험실		▸ 보유 기술의 우수성 및 후속 R&BD의 적절성 ▸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창업) 타당성 ▸ 창업준비 활동의 적절성	15
운영 계획	인프라	▸ 실험실창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프라 구축 계획의 적절성 ▸ 컨소시엄 대학내 실험실창업 전문인력 확보/운영계획의 적절성 ▸ 컨소시엄 대학의 창업교육 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 구축 계획의 우수성 - 컨소시엄 대학 간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프로젝트 트랙, 학/석사 창업연계 과정, 창업연구년, 업적평가 반영 등	15
	창업 교육	▸ 창업 우호적 문화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대학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우수성 - 컨소시엄 대학의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계획 - 컨소시엄별 특성(기술분야, 권역별 창업 네트워크 등)에 맞는 실험실 창업 공통교과 개발 및 공동운영 ▸ 우수한 실험실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 교육모델 운영계획의 우수성 - 창업강좌,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우수한 실험실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모델 운영 계획	20
	성과 관리	▸ 성과제고(창업 등)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대학 인프라 활용 방안 등 ▸ 성과(후속)관리 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품화, 기업설립, 투자유치 등 창업 이후 후속지원의 적정성 - 창업지원(사전기획) 이후, 창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창업유망기술 활용방안	10
파급효과		▸ 사업수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신규고용 창출 등)의 가능성	5
예산 수립		▸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 기술분야, 기관별 예산 지원 적정성, 실험실창업 지원비 사용계획 등	5
합계			100

※ 상기 지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나.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 **(선정대상)** 대학의 **창업 적합성** 및 **가능성**이 **우수**하고, **실제 창업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하였으며, 사전기획 완료한 예비 혁신창업실험실

○ **(추진절차) 수행대학**이 **자체평가**를 통해 **창업유망기술/국가전략기술 보유 실험실** 및 **지원예산**을 제시하고 사전기획을 통한 **BM 타당성 검증** 이후, **대학 자체 평가**하여 '혁신창업실험실'로 **최종 승인**

① **(실험실 발굴)** 대학 내 자체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수준, 창업 적합성 및 가능성, 창업 예정일, 예산 사용계획 등을 검토 → 발굴한 예비창업실험실 요약표를 전문기관에 제출(대학)

② **(사전기획)** 대학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시장수요 기반의 개념증명과 BM을 도출하고, 사업화 목적에 최적화된 사업성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의 BM 타당성 검증(대학)

③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실험실 창업계획서 기반 지원 적절성 및 BM 타당성을 검증 등 경쟁형 평가 실시(대학) → '혁신창업실험실'* 선정

* (구성) 실험실책임자(교원,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대표(실험실책임자와 동일인 가능), 연구원(대학 소속 실험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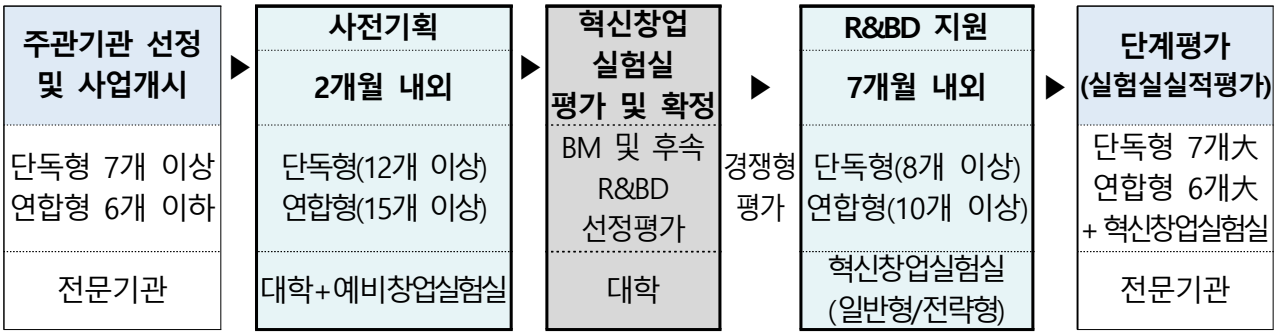
④ **(R&BD)** '혁신창업실험실'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창업 이후 사업화 연계(실험실특화형 창업중심대학 등) 평가를 통해 후속 사업 지원

※ 설명자료 : 2025년 단독/연합형 대학별 실험실 지원 기준

▪ 실험실별 사전기획비 지원예산 총액 및 최소 지원 수 기준을 제시하며, 예비창업실험실 대상 대학 자체평가('25.5~6월)를 실시하여, 혁신창업실험실 최종선정 및 유형별 차등 지원(총 116개 지원)

구분		단독형 (7개 대학 이상)		연합형 (6개 대학群 이하)		예상지원(수) (A+B)
		기준	개수(A)	기준	개수(B)	
1	예비창업 실험실(1.5배)	총 48백만원 內 12개 이상 지원	84개 이상	총 60백만원 內 15개 이상 지원	90개 이상	174개 이상
2-1	혁신창업 실험실(일반형)	총 135백만원 내외 3개 이상 지원	21개 이상	총 225백만원 내외 5개 이상 지원	30개 이상	51개 이상
2-2	혁신창업 실험실(전략형)	총 375백만원 내외 5개 이상 지원	35개 이상	총 375백만원 내외 5개 이상 지원	30개 이상	65개 이상

○ **(평가절차)**



다. 주관기관 단계평가

○ **(평가대상)** ’25년 선정 주관기관(13개)

○ **(평가목적 및 방향)**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평가하여 **1년간 추가지원 여부**(대학) **결정 및 사업비 차등 지원**

○ **(추진절차)** 평가위원회를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

- 주관기관(대학) 평가결과(85%)와 혁신창업실험실 평가결과(15%)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도출

○ **(평가내용)** 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지침・평가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부와 사전 협의(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창업진흥원)

○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단계평가결과, 등급 및 사업비*** **배분 확정**

* 평가 순위에 따라 사업비(교육부 사업비, 과기정통부 사업비) 차등 배분

4. 사업비 편성・집행 및 관리・점검

※ 교육부 사업 예산에 한하여 적용

가. 사업비 관리 방안

○ 사업비는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25년)에 따라 편성·집행

○ 사업비 예산 변경은 수행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를 2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이월 승인받은 1차년도('25년) **사업비의 경우 2차년도**('26년)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집행**

※ 근거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 단계평가('26년 초) 후 계속 수행 대학에 한하여 허용하며, 계속 수행이 불가할 경우 사업비 집행 잔액은 반납

○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비 및 발생이자 사용 잔액(차기 회계연도 이월금액 제외)은 반납

나.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에 대한 조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별 엄중조치**

* ①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②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사업 관련 대학정보공시 지표값 오류 등 사업비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된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③ 사업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 운영과 관련된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④ 그 외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비리로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 관리 매뉴얼('23.7월)>

○ 사안에 따라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삭감 및 환수, 평가점수 감점, 지원액 삭감** 등의 제재 조치 실시

※ 부정·비리 사안으로 사업비 감액조치 등을 통해 발생한 잔여 예산은 타 사업 수행대학에 재배분 예정(배분방식 및 규모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특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가능

*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③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④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사업이 종료·개편된 경우에도 현장점검, 사업비 환수(후속·관련 사업비 삭감), 관련 사업 선정평가 시 반영 등 가능

다. 그 외 사항

○ 기타 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 지원제한 관련 사항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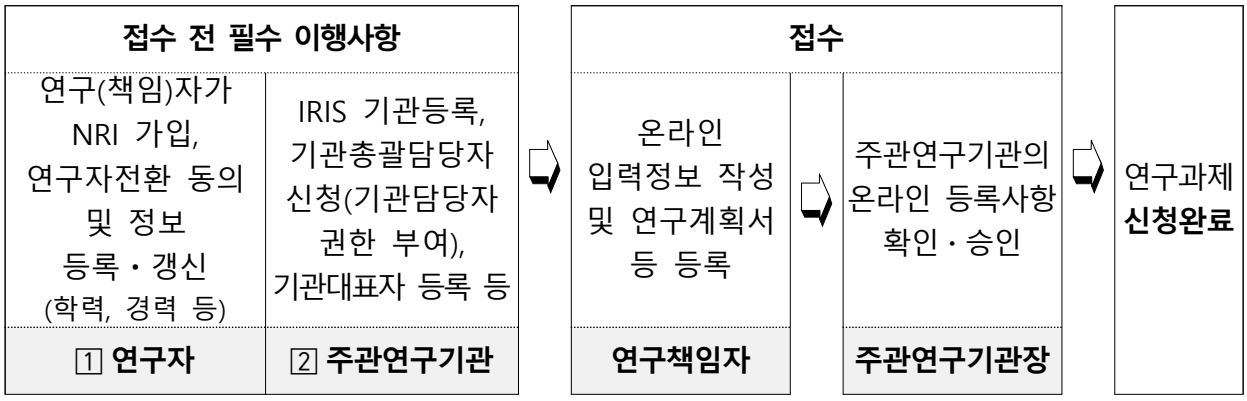
5. 사업 신청

가.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사업 공고 기간	2025.01.20.(월) ~ 2025.02.19.(수) (31일)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5.02.05.(수) ~ 2025.02.19.(수) 18:00 (15일)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5.02.05.(수) ~ 2025.02.19.(수) 18:00 (15일)

나.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2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다.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유의사항 안내

ㅇ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신청 완료(제출 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접수 중(계획서 작성 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일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 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 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접수완료 후 유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기간 내에 접수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 절차 없음

○ **(제출서류)**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 확인 필수

라. IRIS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연구비 구성 시, 사업 안내서 내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참고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동의서) 업로드

※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하며,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구분	목록	제출 확인
별첨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별첨 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필수] 기관참여 확약서	
별첨 4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5	[필수]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마.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작성분량은 **50P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본문에 제시된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 내용과 박스는 삭제하고 내용 기술
- 폰트 및 글자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설정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제출 자료의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자료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

바. 문의처

○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 1877-2041
- IRIS 게시판 : IRIS 접속→알림·고객→서비스·시스템 문의→사용문의

○ 사업 관련 문의

소관부처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창업팀	02-736-9845	eun@compa.re.kr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기반팀	042-869-6403	onion2014@nrf.re.kr

※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 관련문의 : 한국연구재단

※ 실험실창업 준비지원(혁신창업실험실 등) 관련문의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5.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가. 3책 5공 과제 해당여부

○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과제로, **3책 5공 예외**에 **해당**

- 단, 과제 참여율이 100%가 넘지 않도록 타 과제 참여율 조정 필요

나.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 실험실창업지원 내역사업 중복 지원 시

○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연구원(창업대표 혹은 실험실 연구원)이 '25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사업에 동일 참여연구원(EL 혹은 EM)으로 지원하거나, 동일 창업 아이템(유사 기술을 포함한 연구계획서)으로 지원하여 최종 선정되는 경우, **중복 수행이 불가능함**

- **(본사업 수행 희망 시)** 본 사업 최종 혁신창업실험실 선정통보(6월 內 예정) 직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기초교육 중단 및 최종 탐색팀 지원 포기** 의사를 실험실창업혁신단* 및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통보하여함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권역별 주관기관을 말함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수행 희망 시)** 실험실창업탐색팀* 최종 선정통보(5월 內) 직후 **본 사업 지원포기** 의사를 본 사업 주관대학 및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EL(예비창업대표)과 EM(예비창업멤버)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을 말함

다. 기타 사항

○ 과제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용

MEMO